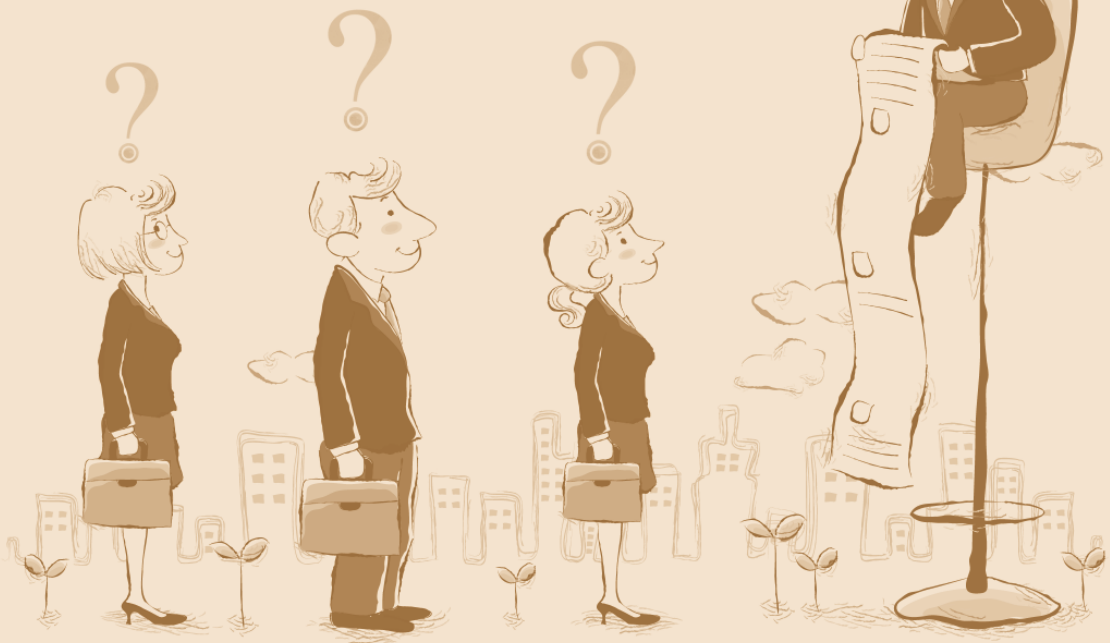


지방재정 실무 백과사전

지방재정 관련 실무를 보다보면 간혹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관련 법률이나 규정, 절차, 사례 등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신설·폐지되거나 바뀌는 법규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럴 때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게다. 그런 이들을 위해 지방재정 실무와 관련된 궁금증과 그 답변, 사례 등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한다. '지방재정' 부문에서는 신문고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질의해온 것들을, '지방세' 부문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감사원 심사결정,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정리했다.



‘지방재정’ 공금증 해결

글 _ 명 삼 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Question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경비 집행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① 의장 및 부의장(250만 원×인원), ② 의원(180만 원×정원), ③ 해외교류 및 우호협력 추진 30%를 합산하여 편성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연간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에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은 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실제 집행금액은 총액 한도 내에서 실제 여비 소요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재정정책과로부터 받은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총액의 한도가 해외연수 목적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예산 총액의 한도(①+②+③) 내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집행할 경우, ‘해외교류 및 우호협력 추진’ 명목으로 세워진 30% 예산에 대하여, 해외교류 및 우호협력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선진도시 견학 등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을 때 추가 30%의 예산 사용가능 여부가 궁금하다.

Answer

우선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의 연간 예산편성 한도액은 의장 및 부의장(250만 원×인원)과 의원(180만 원×정원)의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예산편성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예산편성 한도액은 변함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라 추가 3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순 선진도시 견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연간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30%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불가하다.

Question

공무원 위탁교육비

2012년 현재 공무원이 퇴근 후에 대학(학위과정)을 다닐 경우, 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지와 더불어 시와 노조와의 협약서만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대학 학위과정에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하다. 시와 대학이 협약을 한 후 협약한 대학에 한해서 개인 학위과정에 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지도 알고 싶다.

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개인부서와 관련된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딴 경우 학원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부동산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면 그 학원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더불어 시의원 위탁교육비를 시의회 예산이 아닌 집행부의 예산으로 하여 대학 학위과정에 지원이 가능한가? 시의원의 경우, 집행부 예산이 아닌 의회의 예산으로는 학위과정에 지원이 가능한지?

Answer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12. 2. 28, 행정안전부 훈령 제206호) 제6조의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의 ‘2. 위탁교육비’는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이다. 다만,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이나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 위탁교육훈련이 아닌 개별적인 학위과정이어서 지원이 불가하다.

따라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

을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선발되지 않고, 개인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다니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인정한 학위과정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공무원 개인이 개인 부서와 관련된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낸 경우는,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의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의 '3. 운영수당'에 해당한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 등록 시 수강료 보조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비라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시의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의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의회비' (205)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의회비 내의 통계목(205-01~09)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시의원 위탁교육비는 의회비의 예산에 편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 예산으로도 집행할 수 없다.

Question

세입예산 과목

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한 매뉴얼을 출판사와 유가출판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다. 올해 이에 대한 인세를 받았다. 이때 저작권 사용료를 세입예산의 어느 과목에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을 보면 임대료 수입으로 '기타자산임대수입' 이, 무형자산매각으로 '저작권매각' 이 있다.

계약체결 후에 일정기간이 흐르면 정산을 하여 인세를 받는데, 저작권 매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다. 아니면 행정 재산 사용허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임대료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Answer

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한 매뉴얼을 출판사와 계약하여 인쇄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사용·판매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사용료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12. 2. 28. 행정안전부훈령 제206호) 제5조의 [별표6] 세입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라 정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기타사용료(212-08)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Question

전용 제한 비목

101-04 기간제 인건비를 다른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의 기간제 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하는데,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전용제한 단서에 따르면 전용제한 비목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럼 같은 편성목인 101-04로의 전용은 가능한지? 시설비의 경우에는 동일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 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 전용이 불가하다고 단서가 있다. 시설비를 제외한 전용제한 목적은 다른 사업의 동일편성목으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맞는 것인지 알고싶다.

Answer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적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인건비(총액인건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각 단위사업 또는 목적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101-04)는 예산전용의 제한 항목인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 편성 목 간이라도 단위사업이 다르다면 예산 전용이 제한된다.

Question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목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적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상기 법령의 제한 비목 이외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의 경우에 절차상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업비로 일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제한된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전용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추경예산에 추가반영을 전제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예산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uestion

신설부서에 예비비 사용

현재 조직을 개편중인데, 그 중에 새롭게 ○○공원사업소를 신설 조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때 후속대책으로 ○○공원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이체 등을 통하여 마련하여야 하나 이체할 예산이 없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현재 공원 운영은 ○○군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재단법인인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위는 해산 절차를 거쳐 법인청산 후(3개월 소요) 그 재산을 ○○군에 반납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신설되는 ○○공원사업소 운영에 즉시 필요한 경비를 이체할 과목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이다.

Answer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제한용도 이외의 경우라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사용하고, 향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될 것이다. 다만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점,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해야 한다.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하다.

Question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자금 전용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금부족으로(본예산에 세입은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입처리가 안됨)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문의한다. 자금만 빌려줄 수 있는지? 있다면 자금부서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알고 싶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차입한 자금을 올해 내에 상환하지 않고 장기상환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Answer

지방재정법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서 세계현금(歲計現金)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 자금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자금 전용은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동일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 만약 장기상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 ☺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글 _ 오 정 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Case 01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행한 압류효력’의 적격 여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된다.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Case 02

‘사단의 대표자 명의로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232 판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서 사

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란 유아교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 이 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적법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이 유치원의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설령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이름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Case 03

안벽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2012년 감심 제112호, 2012. 7. 5. 결정)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지적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구 ‘지적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토지란 바깥쪽 어깨부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두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안벽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면서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였는 바, 이 사건 안벽은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볼때 그 안쪽에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안벽은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Case 04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여부

(감사원 2012년 감심 제111호, 2012. 7. 5. 결정)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존 감사원의 심사결정(감심 2008-167, 2008. 5. 29.)과도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심사결정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이번 심사청구와 다툼의 대상이 다르다.

Case 05

환지처분 시 가치 증가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736 판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후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부동산 가액만큼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 그 자체보다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 부동산보다 증가된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려는 데에 있다. 그 과세의 취지가 투기의 방지에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의 지위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이상 투기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환지처분 시 가치 증가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Case 06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재산세 납세의무 적격 여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 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Case 07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우선변제청구권의 배당권리 성립’ 여부

(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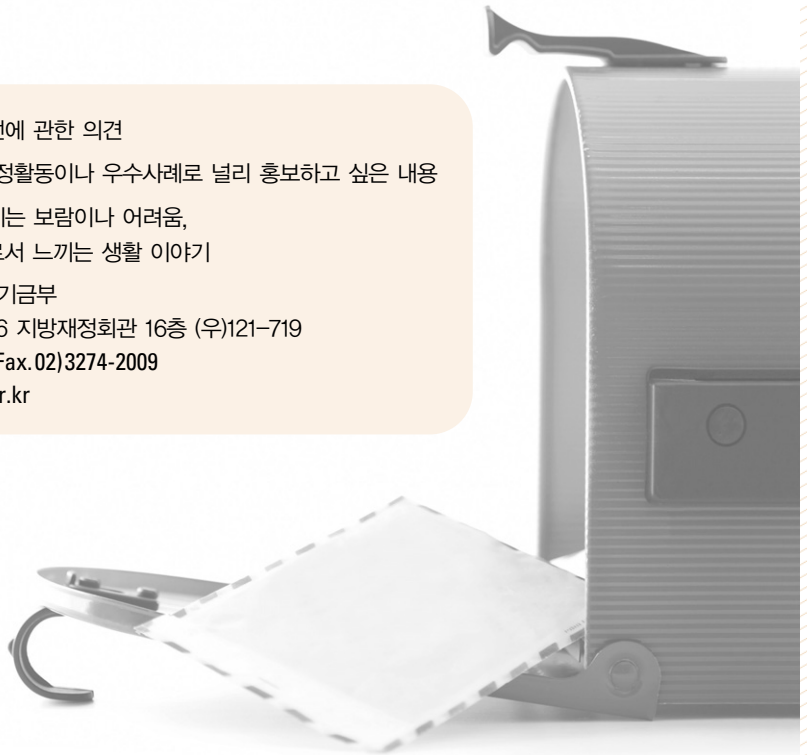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 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채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

‘지방재정’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격월간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 교양지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 지방재정 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에 세 이 |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 이야기
- 보내실 곳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16층 (우)121-719
Tel. 02)3274-2027 / Fax. 02)3274-2009
E-mail. myposse@lofa.or.kr



편집 후기 09*10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었다. 햇빛이 머물던 자리에는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 바람 한줌이, 햇빛 한 자락이, 지나간 세월이 부질없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꽃 한 송이, 열매 한 알을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다. 때가 되면 피고 열린다. 최갑수의 포토 에세이 ‘당분간은 나를 위해서만’에 나오는 이야기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지방재정도, 우리 인생도 그럴 것이라 기대한다.

“예비 재정인의 시각”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 응모자격 |

-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단독 및 공동연구(3인 이내) 가능
※ 공동연구 시 모든 참가자가 공모자격을 갖추어야 함

| 연구주제 |

- 자치단체 예산, 지방계약, 공기업 혁신 등 지방재정 관련 자유 주제

| 특 전 |

- 채택 시 우리회가 발행하는 「지방재정」지에 원고 게재 및 원고료 지급
- 기고된 원고는 우리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재정인' 후보로 자동 등록

| 제출방법 |

- 한글 문서 A4 15매 내외 서술형 논문 • 온라인 접수(myposse@lofa.or.kr)

| 접수안내 |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접수 및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Tel.02-3274-2027)